

가스배관 벽체매립시대 열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외부에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관이 벽체에 매립된 건축물 외관

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편집자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에 매립 설치되는 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관 등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가스배관 시공 시 사용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실내에 전기콘센트와 같이 가스콘센트(전기콘센트와 유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가스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세부내용

1.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 매립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은 특정 가스사용시설에 포함시키는 안전기준 마련, 가스배관 시공 시 사용자 선택 폭 확대

현 행	개 정
건축물 내의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외부 노출 설치가 원칙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설치

2. 가스계량기 외부설치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 가능토록 개선

현 행	개 정
가스계량기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	가스계량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에 설치. 다만, ④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② 환기가 양호할 것 ③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배관의 타 시설물과 이격거리 조정

아파트 및 공동건물 등의 시설물 다변화로 인해 가스배관의 타 시설물과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격거리 유지 시 가스배관 시공이 불가능하여 조정

현 행	개 정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와의 거리는 60cm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c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 유지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 유지

4. 가스콘센트 설치 가능

가스콘센트(전기콘센트와 유사)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 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고, 가스사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5. 가스사용시설 분해점검 주기 조정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와 가스도매사업자의 예비정압기 분해점검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압력조정기 : 매 3년마다 1회 이상 - 사업자 예비정압기 :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압력조정기 :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 사업자 예비 정압기 :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6. 부취제 첨가장치 설치 근거 마련

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는 설비의 설치·운영토록 개선

현 행	개 정
가스누출을 인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첨가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가스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

7.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금지

환기가 불량한 장소(욕실, 주방 등)에서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사용시 불안전 연소로 인해 CO중독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설치 금지

현 행	개 정
실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시키는 개방형온수기 설치 가능	개방형 온수기의 사고 증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이 개정되어 동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도 금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문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